
수산물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2013. 2.

2013 수산물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안내

1. 추진개요

가. 추진목적

- 생산에서 수출까지 계열화를 통해 수출 경쟁력 강화
 - 생산부터 수출까지 일괄 관리하는 우수 수출업체를 육성하여 수산물 수출을 주도하여 수출확대 및 어가소득 증대 기여
 - 우량 수출기업에 집중 지원하여 선도적 기업으로 육성하여 전체 수출 기업을 상향 평준화 유도

나. 필요성

- 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해서 시장교섭력, 안정적 공급 등 규모화된 수출전문업체 육성을 위해 고품질 수산물 생산기반 구축 필요
 - 고품질 수출용 수산물 생산 위해 전문화, 규모화, 단지화가 추세
- 국제적으로 안전성 강화 추세에 대비한 생산·수출 일관 관리하는 수산물 모델 개발
 - 농식품은 규격화, 규모화를 위해 수출단지를 지정하고 생산자 개별 ID를 부여, 안전성을 관리

〈 수출선도조직 정의 〉

- 수출 수산식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확대를 선도하는 조직
- 수산물 수출업체가 생산자조직(이하 “양식어가, 가공업체” 포함)과 상호 구속력 있는 계약 체결
- 어종 선택 및 양식단계부터 수확, 선별, 가공, 포장, 수출, 안전성 및 품질 관리, 정산, 어가교육 등 전 과정을 수출업체 주도로 일관 수행

다. 사업내용

대상품목 : 넙치, 전복, 김, 굴

* 2012년 수산식품 수출액 50백만불 이상의 양식수산물 품목

지원규모 : 조직당 100백만원 이내 (총사업비의 70%이내)

○ 지원 항목별 지원한도 60백만원으로 비용 집행 편중 방지

○ 사업비 인정시기 : 공사에 생산이력ID 관련서류 제출한 후 인정

○ 사업의무량

- 수출물량 : 규격품 수출목표 물량의 50% 이상

- 참여물량 : 어가의 사업참여 공급계약물량의 80% 이상

○ 지원내용 : 품질개선, 품질관리, 물류개선, 조직화·운영관리

신청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신청자격 현황 >

◇ 최근 2개년(평균) 기준으로 선도조직 신청품목을 연간 1백만불 이상 직접 수출한 실적 있는 업체(단, 2개이상의 수출업체가 공동으로 법적 구속력 있는 법인을 설립하여 참여하는 경우 수출액 합산 가능)

◇ 신청품목 생산·공급자(조직 포함)와 수출 수산물 생산·공급·구매계약을 체결한 업체

◇ 자체 또는 공동의 선별장, 가공시설 등을 구비한 업체

* 공동의 선별장, 가공시설은 계약서에 의해 인정하며 사용기준 등 세부내용이 기재되어야함

◇ 신청품목의 생산부터 수출단계까지 품질관리 매뉴얼(자체제작) 제출 업체 (단, 품질관리 매뉴얼 제출확약서 제출한 경우 추후 제출 가능)

2. 선정 및 평가

□ 선정절차

○ 선정절차

- 모집공고 → 사업설명회 → 접수 → 평가 → 선정 → 약정체결

* 수산식품 수출선도조직 사업 신청서 : 붙임 1 참조

○ 평가절차

- 1차심사(서류심사) → 2차심사(현장실사) → 3차심사(PT평가)

○ 접수기한 : 2013. 3. 8(금) 18:00까지(우편은 도착분에 한함)

□ 선정기준 및 평가항목

○ 선정기준

- 평가결과 총점 7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선도조직 선정 후 포기 발생 시에 차순위 업체를 선도조직으로 선정(선정년도에 한함)

- 1개 업체가 여러 품목 신청할 수 있으나 1개 품목만 선정

○ 평가항목

항 목(세부항목갯수)	가중치	세 부 항 목
발전·성장가능성 (2)	30	수출규모, 국가수출점유비중
고품질생산 및 안정적인 물량확보 능력 (2)	30	수출계약 생산물량비중, 생산이력추적 가능정도
사업수행 적정성 (3)	40	어가관리·선별시설 상태, 품질·품위인력운영의 적정성, 회원사 역할분담 등 조직관리체계 구축정도, 사업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 마케팅을 통한 해외시장개척능력
합 계 (7)	100	*가점 (최대 10점) 별도

* 수산식품 수출선도조직 선정 평가서 : 붙임 2 참조

3. 선도조직 약정 및 관리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선도조직간 약정서 체결(공사 ↔ 선도조직)
 - 사업목표량 및 의무량, 생산이력ID 부여 관리, 생산품에 대한 품위관리, 보고사항, 사업비 정산, 각종 위반 시 제재사항 등
- 선도조직과 생산자간 수출수산물 공급 계약체결(선도조직 ↔ 생산자)
 - 표준 수출규격품 공급계약서를 참고하여 체결(붙임 3)
- 계약체결 생산자에 생산이력ID 부여 관리
 - (공사) 선도조직에 ID 부여 → (선도조직) 지역·생산자별로 생산이력 ID를 자체 부여하고 관련서류 일체를 공사에 제출
- 품위기준 설정
 - 공사는 업체가 선도조직 신청 시 제시한 품위기준을 토대로 적정 수준 설정하여 운영
- 선도조직 점검
 - 공사는 선도조직의 ID부착, 품위규격 준수 등 품위관리상태를 분기 1회 이상 점검
 - * 외부전문기관을 활용한 점검으로 대체 가능
 - 공사는 선도조직 운영상황을 매년 1회 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점검 가능
- 선도조직 교육
 - 선도조직 사업자, 회원사 및 소속어가 대상 조직화 교육을 통해 사업참여자간 공감대 형성 및 역량강화
 - 선도조직 사업자 대상 교육학점제도 시범 도입·운영
 - 교육 1건당 1학점 부여하고 최소 5학점 이수 의무
- 사업참여 결속력 강화
 - 연합법인 선도조직 참여 업체(회원사)가 중도 이탈할 경우, 선도조직 사업 참여기간 동안 수출 활성화지원 제외 및 3년간 선도조직 사업 참여에 제한

- 어가와와 규격품 재배계약서에 따라 계약이행을 10%미만 어가는 차년도 사업참여 제외

□ 선도조직 사업목표 설정

- 규격품 수출물량 목표 및 어가 참여물량 목표 2개 계량목표 부여
 - 목표 물량과 생산면적은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되도록 목표 설정하는 것이 원칙
 - * 연간 평가결과 실적미달 또는 품목별 특성 등의 반영이 필요한 경우 공사는 타당성 검토하여 농식품부 승인을 받아 목표 설정·조정
 - 사업의무량 : (수출물량) 규격품 수출목표 물량의 50% 이상,
(참여물량) 공급계약목표 물량의 80% 이상

4. 선도조직 실적평가

□ 평가방법

- 선도조직 운영실태에 대하여 연1회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평가 가능하며, 연말평가를 통해 차년도 계속지원 여부 결정

□ 평가항목

- 계량 평가 50% 및 비계량 평가 50%로 구성

□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 60점 미만 선도조직은 익년도부터 3년간 사업대상에서 제외하며, 제외기간 종료 후에는 선도조직 재신청 가능
- 사업대상제외 선도조직이 발생한 품목은 필요시 추가사업자 선정 가능
- 평가결과에 따라 포상 및 제재 실시
 - 평점 90점이상 : 차년도 박람회, 판촉행사 사업 우선 지원
 - 평점 80점이상 : 차년도 박람회, 판촉행사 사업 택 1 우선지원
 - 사업의무량 미달 등 부적격 사유 발생 시 공사와 체결한 약정서에 따라 제재

5. 선도조직육성 사업비 지원

□ 공사에 생산이력ID 관련서류 제출 후부터 지원

○ 선도조직의 수출활성화 지원

- 선도조직 조기정착을 위해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며 사용 후 정산

* 사업비 지원 세부항목 예시표 붙임 3 참조

- 지원규모 : 조직당 100백만원이내 (총사업비의 70%이내)

□ 사업비 집행시 유의사항

○ 비용집행이 편중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며, 최소 2개 항목이상에서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함

○ 지원항목별 지원한도 60백만원으로 초과시 불인정

○ 사업신청서상 소요액을 기준으로 정산. 세부내역 등 변경 시 변경계획을 자체 수립하여 집행

□ 선도조직육성 사업비 정산

○ 선도조직 사업종료 후에 지원조건 충족 시 지원항목별로 정산

○ 정산기준

- 사업목표 달성율에 따라 사업비 정산

[정산금액 = 사업비 집행액 × 70% × 목표 달성율]

* 정산 금액 한도 : 약정서 상 지원 규모 x 목표달성율

· 사업목표 달성율은 선도조직 약정서 상의 2개 목표치(수출물량, 공급계약)의 단순평균 달성율에 따라 정산

【붙임 1】

「수산식품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신청서

1 조직현황

□ 개 요

조직명				대표자		
주 소						
전 화				팩 스		
사업자번호				법인설립일		
담당자	(직위)	/ (성명)		핸드폰		
매출액 (천원)	('10)	('11)	('12추정)	종업원수		
자기자본 (천원)	('10)	('11)	('12추정)	당기순이익 (천원)	('11)	('12추정)

* 최근년도('11 및 '12) 재무제표 첨부

□ 신청품목 내역

○ 신청품목 :

※ 전체 취급품목 :

○ 수출실적(전체, 선도조직 신청품목에 대해 연도별로 작성)

(단위 : 톤, 천불)

품 목	2011		2012		주수출국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품목수출실적					
선도조직 신청품목()					

* 외국환은행장(또는 한국무역협회장) 발행 '11, '12년 수출실적증명서 첨부

○ 수출물량 비중 ('12)

(단위 : 톤)

구 분	연간취급량 (또는 소요량) (A+B)	내수물량등 (A)	수출물량 (B)	수출물량중 재배 계약 조달물량 (C)	C/B
합 계					
- 생산자(조직포함)...					
- 기타(비생산자)	-				
- 가공업체					

* 생산자별 계약서, 전산정산자료 등 각 항목별 증빙자료 첨부

② 사업계획

1. 사업참여 목적

2.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추진 기반

가. 참여어가수 및 계약면적, 생산량, 수출량 : <별지 1>양식에 기재

나. 주요시설 및 장비보유 현황 (공고일 기준)

시설명		시설규모	보관,처리능력	소유구분 (자가,임차 등)	비고
계		m ² (평)			
시설	선별장(시설)	m ² (평)	톤/일		
	가공시설	m ² (평)	톤/일		
	보관수조	m ² (평)	톤/일		
	저온저장고	m ² (평)	톤		
	냉동시설	m ² (평)	톤		
	일반창고	m ² (평)	톤		
	기타(사무실 등)	m ² (평)			
장비	선별(생산)시설		조		
	지게차		대		
	수송차량 등		대		
	기타				

*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기재사항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

다. 수출선도조직 인적자원 확보 현황 (공고일 기준)

○ 수출담당인력

성명	직위 및 직책	입사일자	근무경력	비고
			ex) 년 월('00.2.1~공고일)	
합계	명		년 월	

○ 품질관리전담인력 현황(생산현장)

성명	직책	입사일자	품질관리분야 근무경력	관련자격증 유무(명칭)	비고
			ex) 년 월('00.2.1~공고일)		
계	명		년 월	자격증 : 매	

- 증빙서류 : 해당직원의 납입증명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서중 택1)

품질관리를 외부기관과 위탁계약시 외부기관과 연간계약서 사본 첨부

※ 품질관리전담인력 : 생산현장에서 어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고품질생산 지도를 담당하는 직원

○ 품위관리전담인력 현황(선별, 가공현장)

성 명	직위 및 직책	입사일자	근무경력	비 고
			ex) 년 월('00.2.1~공고일)	
합 계	명		년 월	

※ 품위관리전담인력 : 공동선별장에서 해당 품위기준에 따라 선별포장여부를 관리하는 직원

라. 생산이력 ID구축 내용 및 계획(전산자료, 사진 등 자체보유 자료로 증빙 필요)

마. 재배어가와의 정산시스템 구축내용 및 계획(자체보유 자료로 증빙 필요)

3. 신청품목 수출확대 의지

가. 수출대상국(지역)

- 주력 수출시장
- 향후 개척시장

나. 국내외 시장여건 분석

- 국내 수출여건(생산 및 유통 현황, 가격동향 등)
- 해외 수출여건(주요 수입국 및 시장규모, 소비현황, 소비자기호, 품질 및 가격 경쟁력 등)

다. 사업목표 : 향후 3년간 연도별 사업목표 및 추진내용

- 사업목표(신청품목의 수출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

① 생산하고자 하는 고품질 품위기준(시장별 소비자 기호, 바이어의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세부 품위기준 작성, 현재의 품질기준과 비교 작성)

* 제시한 품위기준은 향후 '수출활성화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② 규격품 수출물량목표(비율은 전체 수출량중 규격품의 점유비율을 기재)

구 분	2013	2014	2015	'12실적
규격품수출목표	톤(%)	톤(%)	톤(%)	톤(%)

* 목표설정시 유의사항

- 수출목표는 생산·공급자와의 공급계약을 통해 매년 달성하고자 하는 규격품 수출물량으로, 매년 최소의무량(수출목표물량의 50%) 설정의 기준이 됨
- 2013년 이후 전년대비 매년 최소 10% 이상 증가되도록 목표 설정

③ 조직 강화 목표(공급계약물량 확대목표)

구 분	2013	2014	2015
공급계약(물량)	톤	톤	톤

* 조직의 규모화를 위해 2013년부터는 전년 대비 매년 최소 10% 증가되도록 목표 설정

○ 목표설정 근거

- 수출목표 :
- 조직강화 목표 :

* 목표치 설정근거가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와 협의를 통해 추후 조정될 수 있음

4. 목표달성계획 (선정 이후 운영실태 점검자료로 활용예정)

가. 품질개선계획

나. 품질 및 안전성 관리계획

다. 해외 마케팅계획

라. 생산어가와 조직화 및 규모화 계획

마. 규격품 확보계획

○ 생산 계열화현황 및 계획

- 수매(계약채배)지역
- 생산규모
- 시설현황(저장시설, 선별·가공 포장시설, 운송장비 등 보유현황) 및 특징
- 참여 어가현황 등

○ 수출규격품 확보 또는 생산방법

○ 연구개발 현황(인력, 시설, 연간 연구비, 개발실적 등)

바. 해외마케팅 계획(연도별, 월별 세부 추진계획)

- 주력시장 판촉 계획
- 신규시장개척 추진계획(시험수출, 마켓테스트 등)
- 홍보계획

사. 세부 추진계획(연도별, 월별 세부 추진계획)

아. 사업비 소요액(3년간 연도별, 지원항목을 참고해 항목별로 상세히 기재)

자. 인증실적(GAP, GMP 또는 ISO, HACCP)

차. 해외시장개척노력

[신청품목의 최근 3개년 공사 시장개척사업(박람회, 판촉전등) 참가실적]

5. 조직 발전방안

가. 선도조직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계량 및 비계량으로 구분 작성)

나. 조직의 연합화·규모화를 위한 추진 계획

※ 동종 수출업체와 연합한 연합법인 설립·확대 계획 및 운영활성화 계획 등을 세부적 기술

다. 중장기 해당품목 수출선도조직의 비전 제시

라. 규격품과 비규격품의 혼재 수출방지 등 사업추진상 예상되는 애로 사항 및 대책방안 제시

※ 각 항목별로 상세히 작성하고 증빙자료 및 참고자료는 첨부

2013. . .

대표자 : (인)

<별지 1>

계약생산 어가 현황표

No	단지명 (어촌계명)	소재지	생산면적 (양식면적)	연간 생산량	비고
1					
2					
3					
4					
5					
6					
7					
8					
9					
10					

※ 최근년도 실적기준으로 작성하되, 시설면적은 축양장, 가두리, 양식장을 구분하여 표기

<별지 2>

가공공장(생산시설) 보유 현황표

No	소재지	선별기능 (해당여부표시)			처리(생산)능력 (톤/일)	설치연도 (사용연한)	비고 (자가, 임차 등 구분)
		크기	중량	이물질			
1							
2							
3							
4							
5							
6							
7							
8							
9							
10							
계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수신 :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귀중

당사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수출지원 사업관리에 필요한 당사의 수출입 통관자료를 귀 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제공 받을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 아 래 -

- 1) 제공목적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지원사업관리
- 2) 증명서 발급기관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3) 제공항목 : 신고번호, 신고일, 수리일, 선적일, 수출자, 화주, 제조자, 품명(HS CODE) 수출실적[(중량, 수출금액(\$, ₩)], 수입국, 운송방법, 선적항, 재수입여부 등 무역통계자료
- 조회기간 : 2008년 1월 1일 ~ 별도 조치시까지
- 4) 비용부담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 . . .

업 체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법인인감)

첨부 : 1.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붙임 2】

수산식품 수출선도조직 선정 평가서

◦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평가점수				
			8백만불이상	6~8백만불미만	4~6백만불미만	2~4백만불미만	2백만불미만
발전 및 성장가능성 (30)	해당품목 수출규모	15	15	12	9	6	3
			40%이상	30~40%미만	20~30%미만	10~20%미만	10%미만
	국가수출점유비중	15	15	12	9	6	3
			70%이상	60~70%미만	50~60%미만	40~50%미만	40%미만
고품질 생산 및 안정적인 물량확보능력 (30점)	수출계약생산물량비중	15	수	우	미	양	가
			15	12	9	6	3
	생산이력 추적 가능정도	15	수	우	미	양	가
			15	12	9	6	3
사업수행 적정성 (40점)	해당품목의 생산, 선별 시설 구비상태 및 품질 지도사 운영 등 품질개선 노력정도	15	수	우	미	양	가
			15	12	9	6	3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5	수	우	미	양	가
			15	12	9	6	3
	마케팅을 통한 해외시장개척 능력	10	수	우	미	양	가
			10	8	6	4	2
가점 (+10)		+10	- 20이상의 수출업체로 구성된 연합법인 참가 시 5점, 30이상의 수출업체의 연합법인 참가시 8점 - 해당품목 기금조성 실적증빙, 품질관리매뉴얼 구비시 : 각 2점 - ISO, GAP, GMP, HACCP 등 인증보유시 : 각 1점				

◦ 평가 내용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배 점	비 고
발전·성장 가능성 (30)	수출규모 (‘11, ’12평균)	▷ 신청업체의 연간 수출액 규모	15	1차심사
	수출실적 비중 (‘11, ’12평균)	▷ 신청품목 국가전체 수출액중 해당업체 점유비율 - (업체수출액 ÷ 국가전체수출액) × 100	15	“
고품질 생산 및 안정적 물량확보 능력(30점)	계약생산비중(물량) (‘11기준)	▷ 수출물량중 계약생산·공급·구매 물량 비중	15	“
	생산이력 추적 가능정도	▷ 생산자 ID 구축 등 이력추적 체계 구축 실적 및 계획의 정도를 5등급 평가 * ERP 구축시 최고등급, 엑셀등 관리수준에 따라 차등 평가	15	3차심사 (현장 실사 병행)
사업수행 적정성 (40점)	어가관리·선별시설 상태, 품질·품위인력 운영의 적정성, 회원 사 역할분담 등 조직 관리체계 구축정도	▷ 사업계획서 및 현장실사, PT내용 등을 종합하여 5등급 평가	15	3차심사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계획서 및 현장실사, PT내용 등을 종합하여 5등급 평가	15	“
	마케팅을 통한 해외 시장개척 능력	▷ 사업계획서 및 현장실사, PT내용 등을 종합하여 5등급 평가	10	“
계			100	
가 점		- 20이상의 수출업체로 구성된 연합법인 참가 시 5점, 30이 상의 수출업체의 연합법인 참가시 8점 ▷ 해당품목 자조금조성실적증빙, 품질관리매뉴얼 제출시 : 각 2점 ▷ ISO, GAP, GMP, HACCP 등 인증 보유시 : 각 1점	(최대 +10)	1차심사

- ※ 1. 제출된 증빙자료가 고의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신청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2. 동일인증서류가 1개 조직에 1개 이상인 경우도 1점만 인정
 3. 계산식은 소숫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4. 비계량항목 평가시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위원 평균점수로 계산

【붙임 4】

수출선도조직 사업비 지원 세부항목 예시표

지원항목	주요사업	세부항목 예시
○ 품질개선	선진기술 습득	생산·유통전문가 초청 컨설팅비 등
	우량종묘·치패(원료) 구입비 지원	우량 종묘, 치패 구입비, 우량원료 구입비
	생산시설개선, 자재 구입지원	생산품질 제고, 제품 수명연장 등에 필요한 시설개선·자재구입비 등
	안전성 확보사업 지원	친환경생산 자재 구입비, 친환경·GAP·ISO, HACCP 등 품질인증비용 등
○ 품질관리	품질관리체계 운영 지원	품질관리 매뉴얼제작(자문료, 제작비), 품질 점검 및 지도, 품질관리시스템(ERP)·생산이력추적시스템(S/W) 도입 비용 등
	안전성 검사 지원	안전성 검사비, 규격품의 품위선별을 위한 신규인력 운영비 등
	포장개선 지원	포장 디자인 개발, 금형제작 등
○ 물류개선	물류효율화 지원	수출용 파레트, PVC상자 임차·구입비 및 지게차 임차·구입비 등 물류개선비 등
	Cold chain 유통지원	순회 수집차량 임차·구입, 제품 저장·보관 연장제 구입비, 산지-선별장-가공업체-수출업체 물류관리시스템 구축·개선비용 등
	수출마케팅 지원	수출브랜드 개발·등록, 홍보물제작, 판촉 활동 등 지원 등
○ 조직화 및 운영관리	수출전문조직의 결성 지원	회의운영, 전문가 초청 경비 등
	수출전문조직 관리운영비 지원	조직원 관리프로그램 개발비 등
	수출전문인력 양성 지원	무역협회 등 수출전문가과정, 무역대학, 농업벤처 대학 등 교육비 등

* 상기 항목이외에도 선도조직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조직력 강화 및 상품의 품질향상 등 선도 조직 조기정착을 위한 사업에도 집행 가능

수산물 선도조직육성사업비 지원 및 정산기준

공통 기준

- 사업기간내 집행한 비용에 대해 지원하며 사업 추진은 조직 자부담으로 진행하고, 사업 종료 후 지원한도액 및 지원범위 내에서 사후 정산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가 담보(이행보증보험 증권 등)를 제시하는 경우 ‘기반조성인센티브’ 선급금 70%까지 지원 가능
- 정산 시 지출내역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사본은 원본대조필)를 첨부하여야 함
 - 모든 비용지급 영수증은 세금계산서로 첨부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은 불인정
 - 노무비 등 부득이한 경우 해당인력 명세, 입금증빙자료 등에 의거 정산
- 수출선도조직이 직접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 어가가 직접 지출한 경우는 불인정
- 선도조직육성사업비 집행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 항목별 지원한도는 60백만원으로 함
- 해외에서 현지화폐로 집행한 비용은 집행시점의 환율 적용
 - 환율관련 증빙서류 미비시는 정산(지원)시점 외환은행 매도율 적용
- 본 사업과 동일 건으로 정부 또는 지자체의 사업비를 중복해서 수혜 불가
 - * 동일 건이라 함은 동일사업으로 지원받은 것을 의미함
 - 예시) 공사 박람회 사업에서 지원받지 못한 항공료, 숙박비 등을 사업비 신청하여 정산 불가
- 정산은 12월 10일까지 사업비 집행분 인정 및 수출실적은 공사의 정산승인시점(12.22)까지 선적일을 기준해 달성을 평가

항목별 세부 정산요령

□ 품질개선비

- 전문가 초청 컨설팅 : 항공료 및 숙박비 지원
 - 항공료 : 이코노미 클래스 기준
 - 호텔비 : 1일 × 20만원 × 5일 = 100만원 이내
 - 바이어 인적사항, 상담실적 등 보고서 및 사진자료, 초청자 여권사본 제출
- 제품개선·개발관련 연구용역 : 외부 전문연구기관 용역에 대해 지원
 - 가공식품에 한정하며 한국식품연구원등 공인기관의 인증 품목신고서 제출
- 원재료(원료)구입비 : 제품개발(개선)에 투입되는 원재료(원료) 구입비용
 - 가공식품에 한정하며 한국식품연구원등 공인기관의 인증 품목신고서 제출
- 우량 종묘·채묘·치패 등 구입비, 품질제고에 필요한 생산자재 구입비, 친환경재배 자재 구입비 등
 - 수출선도조직 명의로 공동구입분에 한해 지원

□ 품질관리비

- 잔류검사, 식품검사 등 안전성 검사비
- 품질점검 및 지도비 : 선도조직이 품질관리지도사를 지정하여 계약어가 품질점검 지도
 - 지원기준(업체 소재지 기준) : 관내 15천원/일, 관외 50천원/일
 - 품질관리 지도보고서 (소정양식 또는 자체양식) 서류 제출

□ 물류개선 및 수출마케팅비

- 물류효율화 비용
 - 지식경제부(구 산업자원부) 고시에 의한 물류표준설비 인증을 받은 파레트, PVC상자, 지게차 등을 임차구입하는 비용
- Cold chain 유통비용
 - 순회 수집차량 임차·구입, CA·MA저장 등 제품저장기간 연장비용, 물류관리시스템 구축·개선비용 등

※ 단, 취득한 주요자산 시설물에 대해 사후관리실시

- 선도조직 사업자
 - 취득한 주요 자산물에 대해서는 매년 장부를 비치·작성하여 그 수량의 증감과 현재액을 명확히 기록하여 연 1회 지사에 보고
 - 사후관리 관련 협약서 작성 후 공사(지사)에 제출
- 총괄지사
 - 취득한 주요 자산물 혹은 향후 취득 되는 단일 시설물로, 총사업비 기준 1천만원 이상 주요자산의 경우 취득 후 5년간 연 1회이상 점검실시

○ 해외시장개척비(시장조사 및 수출상담 등)

- 상품개발, 현지 시장유통·소비실태 조사 및 바이어 상담 등을 위한 활동비
- 1인 2회까지 지원 (단, 생산어가 포함시 2인까지 지원)
- 항공료 : 이코노미클래스 기준
- 호텔비 : 1일 × 20만원 × 5일 = 100만원 이내
- * 조사(상담)결과 보고서 및 사진 등 증빙 제출

○ 해외바이어 초청 : 해외기술전문가 초청비와 지급기준 동일 적용

- 바이어 인적사항, 상담실적 등 보고서 및 사진자료, 초청자 여권사본 제출

< 마켓테스트 및 판촉홍보행사 관련비용 >

○ 행사요원 지원비 : 마켓테스트 및 판촉행사 관련 출장 시 인정

- 1인 2회까지 지원, 항공료 및 호텔비는 시장조사비 지급기준과 동일 적용

○ 판촉홍보 행사시 시식물품대

- 사전 공사 협의를 통해 승인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

○ 통역·판촉요원 고용비

- 수출선도조직 주관으로 마켓테스트 또는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에 지원
- 행사기간내 고용에 한해 인정하며, 현지 통상적 보수 기준한도 내 지원
예) 미주·유럽·싱가포르·홍콩 : US\$250/일, 일본: 25,000엔, 중국·동남아 :US\$150/일
-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사사진(판촉요원 포함) 및 ID카드 제출(없을 경우, 의료보험증 등 본인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등)

□ 조직화 및 운영관리

○ 조직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경비

- 전문가 초청경비 : 자문료 포함 1,000,000원/회 한도내 5회까지 지원

○ 무역협회 등 수출전문가과정, 농수산무역대학 단기 무역과정 수강료

: 지원업체 및 계약어가 단기과정(1년이내 과정) 이수 수강료에 한해 지원

- ※ 단, 별도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는 경우 해당 사업관련 정산이 불가하므로 사업비 정산 시 유리한 1곳에만 신청하여 정산 가능

*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등 관리성 경비는 기반조성 인센티브로 정산 불가능